#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026

발의연월일: 2021. 3. 23.

발 의 자:이종배・김상훈・최춘식

조수진 • 태영호 • 이종성

김예지 • 박대수 • 성일종

구자근 · 김선교 의원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하여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하여 밝혀진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역사문화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충북, 강원, 경북,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백제·신라시대의 유적·유물이 융합하여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킨 중원역사문화권은 정비사업 대상에 빠져 있어, 별도의 역사문화권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충북, 강원, 경북,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백제·신라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중원역사문화권으로 규정하는 한편,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역사문화권 정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역할 강화 및 정비구역 내 행위허가 사항의

관리를 위한 신고서 제출 의무화, 정비구역이 고도 지정지구와 중복될 시 행위제한을「고도육성법」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 제22조에 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18조에서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항의 오류를 수정해 법률의 체계를 바로잡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 제16조 및 제18조).

#### 법률 제 호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412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중원역사문화권: 충북, 강원, 경북,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백제·신라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제6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

위의 허가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18조제2항 중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을 "지정에"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412호 역사문화권 정비	법률 제17412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	1
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	
적 • 유물을 통해 밝혀진 다음	
각 목의 권역을 말한다.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사. 중원역사문화권: 충북, 강
	원, 경북, 경기 지역을 중
	<u>심으로 고구려·백제·신</u>
	라시대의 유적・유물이 분
	포되어 있는 지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6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①	제6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	5
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	
회를 둘 수 있다. <후단 신설>	<u>이 경우</u> 분과위원회

### ⑥·⑦ (생 략)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정비 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u>②</u>·<u>③</u> (생 략)

<신 설>

의 심의를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⑦ (현행과 같음)
]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② 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착
수 ·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허가권자에게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
<u>다.</u>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정비구역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
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

제18조(사업시행자)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의 <u>지</u>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존지구와 중복되는 지역에서
	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
	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u>다.</u>
4]	18조(사업시행자) ① (현행과
	같음)
	2
	지정에